

● 멕시코 회사 상호 및 주주 변경 절차

멕시코시티 무역관

조우현 변호사/Cho & Asociados 법무법인

(cho@choasociados.com)



D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입니다. 신규법인으로 회사를 운영 중 한국본사 상호 변경 및 주주변경에 따라 멕시코 자회사 상호변경 및 주주변경을 준비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호 및 주주변경 절차 및 기간 그리고 각 기관 신고의무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멕시코 회사 상호 및 주주변경 절차 및 소요기간 그리고 제반 신고업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회사상호 및 주주변경

1.1. 상호허가 신청

1) 절차

멕시코 경제부 회사국에 변호사나 공증사무실을 통해 신청하며 허가서 승인관련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변호사나 공증사무소 상호허가 취득관련 서비스 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소요기간

통상 2~3일안에 상호허가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1.2.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위임장 작성

1) 절차

경제부 전자공고 시스템 (Sistema Electrónico de Publicaciones de Sociedades Mercantiles) 에 주주총회 소집공고합니다. 통상 주주총회 개최일 15일 전에 소집안을 공고합니다.

회사 주주가 한국회사나 개인 주주일 경우 변호사를 통해 위임장을 준비하며 회사 주주 (법인/개인)는 위임장에 각각 자필 서명하여 DHL로 멕시코에 원본을 송부해야 합니다.

2) 소요기간

통상 위임장 작성기간이 2~3일정도 소요됩니다.

1.3.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1) 절차

변호사를 통해 스페인어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소요기간

통상 주식매매계약서 작성기간이 2~3일정도 소요됩니다.

< 저작권자 © 멕시코 조우현변호사 2016 작성 무단전제 - 재배포금지 >

©Copyright 2016 Woo Hyun Cho All Rights Reserved.

1.4. 주주총회결의서 작성

1) 절차

변호사를 통해 스페인어로 상호변경 승인 및 주주변경에 따른 안건으로 주주총회결의서 작성합니다.

2) 소요기간

통상 주식매매계약서 작성기간이 2~3일정도 소요됩니다.

1.5. 주주총회결의서 공증

1) 절차

회사 대표자 혹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증사무실 출두하여 주주총회결의서 공증을 합니다.

2) 소요기간

공증사무실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통상 4-5일 뒤에 공증을 합니다.

1.6. 등기사무소 등기

1) 절차

통상 주주총회결의서 공증을 한 공증사무소에서 등기사무소 등기업무를 대행합니다.

2) 소요기간

서류 제출 후 등기가 완료되는데 통상 2-3 주 정도 소요됩니다.

상기 업무를 모두 마치면 다음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결의서 등기 이후 각종 기관 신고의무

회사 상호 및 주주변경관련 주주총회 결의서 공증 및 등기 이후 다음 기관에 상호변경 사실 신고해야 합니다.

2.1. 국세청 회사상호 변경 신고

1)절차

국세청에 예약일을 잡아 등기완료 된 주총결의안을 들고 회사대표가 직접 출두하여 상호변경 사실을 신고 및 등록하는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이 재발급 됩니다.

< 저작권자 © 멕시코 조우현변호사 2016 작성 무단전제 - 재배포금지 >

©Copyright 2016 Woo Hyun Cho All Rights Reserved.

2)소요기간

국세청 예약일 지정에 따라 상이 합니다

2.2.-사회보장원 (IMSS) 과 주정부 재무부 (TESORERIA)에 회사명 변경사실 통지

1)절차

현재 IMSS에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면 상호변경 된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류 와 등기완료 된 주주총회결의서를 지참하여 회사대표가 IMSS에 직접 출두하여 상호변경 사실을 신고 및 등록하는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Tesoreria 에는 대리인을 시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소요기간

IMSS 신고는 예약일 지정에 따라 상이 합니다. Tesoreria 신고는 당일 가능합니다.

2.3. 이민청 회사상호 변경사실 신고 후 고용주등록증 변경

1)절차

이민청에 고용주등록증 상 명시된 회사명 변경이 이루어 졌음을 통지하고 회사명이 수정된 고용주등록증을 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상호변경 업무가 마무리 되어야 앞으로 회사이름으로 외국인 직원들 워킹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소요기간

통상 신고접수 후 2-3주 안에 회사 상호변경 된 고용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2.4. 거래은행 회사 상호변경 신고

1)절차

상호변경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법인계좌 개설은행에 회사상호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2)소요기간

은행 내부적인 프로세스로 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2.5. 경제부 외국인투자국 상호변경 신고

1)절차

상호변경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경제부 산하 외국인투자국(RNIE)에 상호변경 사실 신고 해야 합니다.

2)소요기간

< 저작권자 © 멕시코 조우현변호사 2016 작성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

©Copyright 2016 Woo Hyun Cho All Rights Reserved.

예약 없이 당일 신고 가능합니다.

해외투자 Tip

α 주식양도세 납부의무

주식을 양도/매매 할 경우 양도주식 매매가의 25%를 “주식양도세”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자 한다면 주식양도에 따른 주식의 현재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 주식가치평가감정서(Dictamen Fiscal)를 국세청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로부터 받아 국세청에 제출 시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세 받습니다. 만약 주식의 현재가치가 출자 당시 가치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다 혹은 손실을 봤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25% 양도소득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25%가 아닌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